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 등록 시 직영점 운영 의무화 등〉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31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0. 17.
- (3) 회 부 일 : 2025. 10.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사업방식이 검증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역시 새로운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변경의 사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에는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변경등록 이후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나목,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4제1항제6호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의 사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운영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2조제10호나목, 제6조의3제1항), ② 일정 기간동안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 아. (생략) 11. · 12. (생략)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u>가맹사업의 업종 및 가맹점사업자</u> ----- 다. ~ 아. (현행과 같음) 11. · 12.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u>정보공개서 등록</u>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 ----- <u>정보공개서 등록 또는 변경등록</u> -----

현행	개정안
경우에는 <u>정보공개서의 등록</u>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u>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u>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	-----<u>정보공개서 등록 또는 변경등록</u>----- -----. 1. 2. (현행과 같음) 3. ----- -----<u>등록하거나</u> <u>가맹사업의 업종 변경을 사유</u> <u>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u> <u>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u> <u>우 등록·변경등록 신청일</u>-----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

현행	개정안
· 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 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한 날 또는 가맹사업의 업종 변경을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날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직영점 운영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6조의3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이 없거나 직영점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신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¹⁾

1)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여야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직영점 운영 의무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개시에 따른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에 도입하였음.

○ 그런데, 직영점 운영 의무는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양도받아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어도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음.

- 실제로 직영점 운영 의무 시행 직전에 대규모로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상당수가 가맹사업 개시 없이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²⁾

□ 이에 개정안 제6조의3제1항은 가맹본부가 업종을 변경하여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는 경우에도 신규 등록의 경우와 같이 직영점 운영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직영점 운영 의무가 사업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가맹사업을 개시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등록된 정보공개서: 7,094개('20년) → 11,218개('21년)(58.1% 증가), '24년 기준 등록된 영업표지(12,377개)의 35.0%(4,330개)가 가맹점 수 0개(「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 p. 7, 공정거래위원회, 2025. 9.)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면, 변경된 업종의 가맹사업은 기존 사업과는 다른 사업이므로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 제6조의4제1항제6호는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업종 변경으로 인한 변경 등록에 한함)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가맹사업을 개시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을 영위할 의지가 불분명한 것이므로, 개정안은 이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취소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하고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한 날이나 변경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 취소 대상의 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등록의 취소가 침익적 행위인 점,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필요성, 입법례³⁾ 등

3)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을 고려하여 적정 기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 변경을 통한 직영점 운영의무 회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직영점 운영의무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정보공개서가 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4조(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